

광고 제 2026 - 3호

# 선 거 공 고

2026년 2월 20일 실시하는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비상임이사) 선거에 있어 선거일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 비상임이사 7명 (영덕 4명, 울진 3명)
2. 선거인 : 영덕울진축산농협 대의원(선거일공고일 대의원 명부에 등재된 자)
3. 선거일 및 장소 : 2026년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기총회 시)  
영덕울진축산농협 울진유통센터 2층 대회의실
4. 피선거권이 있는 자 : 선거일공고일 현재 영덕울진축산농협의 조합원으로 농협법 및 정관에 의하여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 가. 열람기간 : 2026년 2월 6일부터 2024년 2월 19일(09:00~17:00까지)
  - 나. 열람장소 : 영덕울진축산농협 본·지점
  - 다. 열람권자 : 선거권이 있는 자
  - 라. 이의신청 : 선거인명부에 오기, 누락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당 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6. 후보자등록 신청
  - 가. 신청기간 : 2026년 2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2일간) (09:00~17:00까지)
  - 나. 접수장소 : 영덕울진축산농협 선거관리위원회 (영덕 본점)
  - 다. 신청방법 :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신청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울진축산농협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총무과로 문의 바람. (054-730-2705)

2026년 2월 6일

영덕울진축산농협 선거관리위원장(인)



## 구비서류 일람표

구 분	부 수	발 급 자
1. 후보자등록신청서(소정양식)	1 부	본 인
2. 출자금원장 사본	1 부	조 합 장
3.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1 부	조 합 장
4.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부	해당기관장
5. 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부	해당기관장
6.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1 부	조 합 장
7. 비경업관계사실 확인서	1 부	조 합 장
8.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부	해당기관장
9. 범죄경력조회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1 부	해당기관장
10. 공명선거실천 서약서	1 부	조 합 장
11. 기타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부	해당기관장
12. 선거공보(공보제출자에 한함)	1 부	본 인
13. 후보자사진 2매(5cm × 7cm)	1 매	본 인

## 임원의 결격사유 및 피선거권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법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 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법 제173조제1항 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1,000좌이상(500만원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 중앙회 또는 법 제49조제1항 제11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5백만원 이상의 채무(보증 채무를 제외한다)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사람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 하지 아니한 사람
    -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240만원 이상
    - 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적금의 평균잔액 : 200만원 이상
    -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800만원 이상
    -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1만원 이상
- ② 제1항 각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 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현재”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00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2.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우리조합·다른 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이나 이사·이사, 우리조합 자회사의 임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우리 조합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이하 이 관에서는 “이사”라 한다)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4.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써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